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Ⅰ. 개정이유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건축위원회 설치(안 제5조 개정)

○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 : 제5조 제4항 ⇒ 제5조의5

2. 건축위원회 구성(안 제6조 개정)

○ 위원회 구성 : 10명이상 15명이내 ⇒ 25명이상 100명이하

○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주무과장) ⇒ 위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구성 : 군수가 임명, 위촉. 공무원위원은 1/4이하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학회, 단체, 협회의 추천 또는 공모로 위촉. 공무원 위원은 1/4이하,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도시계획, 건축관계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 : 3년으로 연임 가능 ⇒ 3년으로 한차례만 연임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6조의2 신설)

○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대상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 당사자거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 위원이 해당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자(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재직한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한 경우

○ 해당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 기대가 어려워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결정(기피신청 대상위원 참여 못함)
○ 제척사유 대상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4. 위원의 해임·해촉(안 제6조의3 신설)

○ 위원의 해임·해촉 대상
-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 제6조의2 제1항에 의한 위원 제척대상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건축위원회 기능(안 제8조 개정 및 신설)

○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
- 제1항 제3호 : 영 제5조제4항 ⇒ 영 제5조의5제1항
- 제1항 제4호 : 영 제5조제4항제6호 ⇒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 제1항제5호 신설 :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6. 건축위원회 회의(안 제10조 개정 및 신설)

○ 제2항 개정(회의 소집) :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위원에게 통지(단, 긴급 또는 부가피시 예외) ⇒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참여위원 확정하고 7일전까지 안건 위원에게 통지(단, 기밀유지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제3항 신설 : 법 제11조의 건축물 건축사항 심의접수일부터 30일이내 개최

○ 제4항(종전 제3항) 개정 : 재적위원 ⇒ 구성위원. 의결 ⇒ 심의 등을 의결

○ 제6항 신설 : 심의 등 신청자에게 심의 참여 위원 명단 및 결과 통보

○ 제7항 신설 : 건축주 등 심의 신청자가 희망시 회의 참여하여 해당안건 등 설명할 수 있음

7.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안 제14조 삭제)

8. 가설건축물(안 제21조 개정)

○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 : 제14호 ⇒ 제15호

9. 설계도서의 작성(안 제21조의2 신설)

○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 영 제15조 제5항(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단,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비슷한 것(제4호) 제외 제21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

1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 제23조 개정)

○ 제1항 및 제2항 개정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범위 내 수수료 지급 및 수수료는 종전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제3항 및 제4항 ⇒ 제2항 및 제3항

11. 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안 제25조 삭제)

12. 수시점검 실시(안 제25조의2 신설)

○ 영 제23조의2 제5항 따라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3. 대지안의 조경(안 제26조 개정)

○ 시행령 법조항 개정사항 반영 : 제5호 ⇒ 제5호 및 제10호

○ 제2항 식수 등 조경 미조치 대상 추가 : 제5호 내지 제8호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안 제27조의2 신설)

○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규정 중 제외 대상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로 정함.

15.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안 제31조 제1항 개정)

○ 제2항 본문 개정 : 제2호 ⇒ 제3호

1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안 제33조 개정)

○ 제1항 본문 개정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 **보행자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 제1항 각호

제1호 ⇒ 삭제

제2호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제3호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제3항(신설) : 영 제8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으로 규정

○ 제3항 및 제4항 ⇒ 제4항 및 제5항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붙임 1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별도 의견 없음 (2013. 09. 30. ~ 2013. 10. 2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5조 제4항”을 “영 제5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4항 중 “영 제5조제7항제1호 라목”을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으로, “심의에만”을 “심의에만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년으로하며,”를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 제5조 제4항 제5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4항제6호”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으로, “찬성으로”를 “찬성으로 심의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⑦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 제5항 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7(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분의 2, 추후 사용승인 시 10분의 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시점검 실시)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를 “자동차·보행자·자전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높이8미터”를 “높이 9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61조 제4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성주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 영 제5조의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소방, 교통, 조경, 문화, 역사, 환경, 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영 제5조제7항제1호 라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필요할 경우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심의에만 위원으로 ----------.

현 행	개 정 안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기능)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
4.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현 행	개 정 안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축심의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 찬성으로 심의 등을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⑦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삭 제>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조 제5항 제14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 ----------.

현 행	개 정 안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7(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분의 2, 추후 사용승인시 10분의 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는 제20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10분의 7(단, 임시사용승인일 경우 10분의 2, 추후 사용승인 시 10분의 5)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100세대,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수시점검 실시)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5호 및 제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 설>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 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 설>	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골프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제3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삭 제>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 9미터 ---------- 1.5미터 ----

현 행	개 정 안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 높이 9미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61조제4항----------